붙임1 2026년 경남지역본부 2차 정정공고 매입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 서류는 꼭 순서대로, 스테이플러 등으로 철하지 말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필수 구비서류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면적은 반올림 없이 소수점 둘째자리로 표기하되, 신청서 및 도면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확인 √
<서식1>	매입약정 신청서 (연락처 및 이메일 필수 기재) ※ 심의용 블라인드 처리된 신청서 1식 추가제출 필요 (매도신청자(대리인 포함), 건축사, 시공사 등에 대한 이름 및 연락처 등 블라인드(비식별) 처리) - 개인) 개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임원 주민번호 뒷자리 및 말소사항 포함)	
	생활편의성 상세내역, 현장사진 및 위치도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행자, 대리인)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및 법인대표자명 별도 기재하여 각 1부 제출	
<서식3>	청렴서약서 (시행자, 대리인)	
<서식4>	위임장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대리인 기준으로 추가 작성) 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포함) - (개인의 경우 가족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소속 직원만 가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② (매도신청인) 신분증 (사본X) ③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서식3> 청렴서약서		
<서식5>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 토지소유주 개인) 토지소유주 전원 신분증 사본 - 토지소유주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서식6>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시행자(대표자)) - 매입심의 통과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족포함) 추가제출	
<서식7>	인허가 관련 확약서	
<서식8>	(높이 60m초과 건축물인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확인서	
<서식9>	매도신청 포기서	

추가 제출 서류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매도신청자 외 개인정보 블라인드처리) 및 지구단위 계획서(허용용도 부분 발췌본) 각 1부 - 토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미확보한 경우, 계약금 입금증 추가 제출 - 토지 매매계약 전인 경우, 토지주의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서식5)로 대체 제출하며, 추후 토지소유권 확보 시 14일 이내 추가 제출	
	(토지가 신탁등기 된 경우) 신탁원부 사본 1부	
	시공사 공사지명원 (없는 경우 종전 시공사례의 내·외부 사진)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에 대한 증빙서류 (매도신청 후 건축허가 등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 제출) - 사유 발생시 추가제출	
2. 건축 설계도면 - A4 출력물 1부, 블라인드 처리된 심의용 PDF도면 1부 이메일 제출 - 설계기준 : 다가구주택은 중심선치수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안목치수		확인 √
<서식10>	호별(세대별) 전용 및 공용면적표 (별첨 엑셀파일) - 호별(세대별) 면적표는 엑셀파일 작성 후 도면 PDF파일과 함께 이메일 접수	
<서식11>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신청 전 도면설계 체크리스트	
<서식12>	설계 가이드라인 셀프 체크리스트 (공통, 계획/기본설계) - 반영/미반영/반영예정/해당없음 기재 후 최종페이지 날인 必	
<서식13>	화재방지방안에 대한 자재선정·시공에 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서식1> 7번 참고하여 순서대로 제출) ※ 심의용 블라인드 처리된 신청서 1식 추가제출 필요 (매도신청자(대리인 포함), 건축사, 시공사 등에 대한 이름 및 연락처 등 블라인드(비식별) 처리)	
3. 해당 시 제출 양식		확인 √
<서식14>	지역권 설정계약서 (진입도로 사도 조건부 매도신청 관련)	
4. 임의 제출서류 (보유 중인 경우 추가제출)		확인 √
	조감도, ISO 등 분양홍보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성평가보고서 등	
	수지분석표 : 한글, 엑셀 모두 가능 -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필수제출	

서식1 **매입약정 신청서**

매입약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지	시 동 번지 *(2개 필지 이상일 경우 전체 필지 정확히 기재)*			
토지소유여부	확보□ 미확보□		블록형(단지형)	해당(동)□ 미해당□
사업시행자 (매도신청인)	성 명 (법인명)	대표 신청자 (인) *2인 이상 공동신청인 경우 별지로 하여 신청인 작성*		
	주 소	*우편 수령 가능한 주소로 기입*		
	연락처	전화 : E-Mail : *휴대전화 번호 기입*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건축사	
	연락처	전화 : E-Mail :		
시공사 (계획중인 경우도 기재)	법인명		대표자	
	유사사례 시공실적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유사사례 시공실적 기재* *(우리공사 납품사례도 기재하고, 공사지명원 있는 경우 함께제출)* *(예시)* *1. 18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 2020-10 도시형생활(원룸형) 150호* *2. 19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0-1 주거용오피스텔 100호(LH)*		
자금조달방법	자기자본(억원, 총사업비 중 %), 타인자본(억원) *PF 등 대출, 현재/향후 신탁 진행여부, LH 자금이용 등 자금조달방법 및 구성비율 자유 기재*			

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기준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에 건축예정(건축중)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시행자(매도신청인) 성 명(법인명) : (인) *인감/법인인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리인 연락처 : (전화)_____ (E-Mail)_____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공급됩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 양식)

서식1 **매입약정 신청서 (심의용 블라인드)**

매입약정 신청서 [심의용 블라인드]

접수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지	시 동 번지 *(2개 필지 이상일 경우 전체 필지 정확히 기재)*			
토지소유여부	확보□ 미확보□		블록형(단지형)	해당(동)□ 미해당□
사업시행자 (매도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 소			
	연락처			
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건축사	
	연락처			
시공사 (계획중인 경우도 기재)	법인명		대표자	
	유사사례 시공실적			
자금조달방법	자기자본(억원, 총사업비 중 %), 타인자본(억원) *PF 등 대출, 현재/향후 신탁 진행여부, LH 자금이용 등 자금조달방법 및 구성비율 자유 기재*			

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기준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에 건축예정(건축중)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매입약정 신청서 [별지]

□ 2인 이상 공동신청 시 작성

토지소재지	시 동 번지	
사업시행자 (매도신청자)	성 명 (법인명)	(인)
	주소	( )
	연락처	전화 : E-Mail :
사업시행자 (매도신청자)	성 명 (법인명)	(인)
	주소	( )
	연락처	전화 : E-Mail :
사업시행자 (매도신청자)	성 명 (법인명)	(인)
	주소	( )
	연락처	전화 : E-Mail :

※ 2인 이상 공동신청 시 신청서 표지에 <u>대표 신청자와 업무처리 담당자 기재 필수</u>

※ 안내사항은 <u>신청서 표지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대표 신청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로 안내함.</u>

1. 건축 개요

* 혼합건물유형 또는 단지형인 경우 면적 및 세대수 등을 각각 표기

건물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기타□ ( )			
입주자유형	일반□ 고령자□ 청년□ 기숙사□ 신혼・신생아1□ 신혼・신생아2□	* 단, 최종 임대취득유형 선정은 검토 후 공사에서 최종 결정		
대지조건	주 소			
	대지면적	㎡	용도지역	
	실사용 대지면적	㎡	용도지구	
	동별 대지면적	연면적 비율로 안분 ㎡ ㎡	지 목	
종전대지 이용상태	나대지□ 노후주택□ (지하층 유□ 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모텔 등)□ 기타□ ( )			
접면도로현황	* 예시 : 기존 6m도로에 14.16m 접함			
연 면 적	지상층 연면적 : ㎡ 혼합건물유형이나 단지형인 경우 각각 표기 지하층 연면적 : ㎡ 반올림 없이 소수점 둘째자리로 소 계 : ㎡ 도면과 일치하게 표기			
건축면적	혼합건물유형이나 단지형인 경우 합계 / 동별 면적을 각각 표기	건 폐 율	법정 %	계획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혼합건물유형이나 단지형인 경우 합계 / 동별 면적을 각각 표기	용 적 률	법정 %	계획 %
건물규모	예시 : 지하 0층, 지상 0층	세 대 수	혼합건물유형이나 단지형인 경우 합계 / 동별 면적을 각각 표기	
구조형식	예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구분	주거용	근생용	계				
	법정	0대	0대	0대	자주식	0대	세대당 주차 대수	0대
	계획	지상 0대 지하 0대 총 0대	지상 0대 지하 0대 총 0대	지상 0대 지하 0대 총 0대	기계식	0대	전기차 충전소	0대

커뮤니티 설치여부	개 (㎡) (동 층)	E/V	인승(대 설치)
근린생활시설 설치계획 및 매도희망여부	호 (동 층) 매도희망/ 매도비희망	공공기여 제안	추가 커뮤니티공간, 빌트인, 근생 할인 매도 제안 등
매도희망가격	(총액) 억원 (호당) 억원		

2. 서류심사 관련 제출자료 [생활편의성]

구분	일반·다자녀·신혼신생아Ⅰ·Ⅱ	고령자	청년·기숙사	시설분류
대중교통 접근성 (1.5km이내)	●	●	●	지하철역, 철도역, 운행주기가 15분 이내인 버스정류장, 환승시설①, 터미널
주거여건 (3km이내)	●	●	●	상업시설(대형마트·백화점②, 재래시장③)
	●	●	●	의료시설(종합병원)④
	●	●	●	공원, 문화시설(극장, 공연장, 전시장 등), 공공시설(주민센터, 시군구청사, 도서관 등)
교육여건 (3km이내)	●	-	-	초·중·고등학교 존재 유무 및 개수
교육여건 (2.5km이내)	-	-	●	대학교 존재 유무

①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② 상업시설(대형마트,백화점)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사이트→데이터찾기→ "행정안전부 생활 대규모 점포 조회서비스" 로 검색→데이터 조회하기 버튼→ [생활 대규모점포 데이터 조회]에서 검색가능한 경우에 인정

③ 상업시설(재래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사이트→데이터찾기→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장소" 로 검색→ [전국전통시장표준데이터]에서 검색가능한 경우에 인정

④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의료정보→병원·약국 종류별 찾기→종류 : 종합병원으로 검색 가능한 경우에 인정

[1] 대중교통 접근성

- 입주자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한지를 평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 포함)
- 평가시 **동일 유형**의 시설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으로 인정**

  * 예) 지하철역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둘 이상으로 간주(동일 유형 시설 인정)
- 증빙자료
  - [서식1] 3. 상세내역 및 [서식1]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일 경우 고시, 공문 등

[2] 주거여건

- **상업·의료시설, 공원·문화·공공시설의 존재 유무 및 개수** 등에 따라 평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 포함)
- 증빙자료
  - [서식1] 3. 상세내역 및 [서식1]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일 경우 고시, 공문 등

[3] 교육여건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존재 유무 및 개**수 등에 따라 평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 포함)
- 신청물건과 가까운 **대학교 존재 유무** 등을 평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을 포함)
- 증빙자료
  - [서식1] 3. 상세내역 및 [서식1]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 2년 이내 완공 예정 시설일 경우 고시, 공문 등

[4] 유의사항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서류심사·매입심의 이후라도 매입약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생활편의성 상세내역 [제출양식]

평가항목	시설구분(명칭)	주소	사업지반경 직선거리	비고
대중교통 접근성 (1.5km이내)	지하철(□□역)		0.0km	
	기차(△△역)		0.0km	
주거여건 (3km이내)	의료시설 (○○병원)		0.0km	
	상업시설 (☆☆백화점)		0.0km	
	공공시설 (◎◎주민센터)		0.0km	
교육여건 (초·중·고 :3km이내) 대학교 :2.5km이내)	A초등학교		0.0km	
	B대학교		0.0km	

※ 직선거리 기준 가장 근접한 시설 각 구분별 **최대 2개 기재**

- 구분 : 교통시설

※ 직선거리 기준 가장 근접한 시설 각 구분별 **최대 1개 기재**

- 구분 : 상업시설 / 의료시설 / 공원 / 문화 / 공공시설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각 항목별 직선거리 **기준 초과할 경우 기재 불요**

4. 빌트인 설치내역

구분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 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설치유무 (O, X)							

- **[청년]** 전체 **[고령자]** 전체(책상, 의자 제외)
- 기타 빌트인 품목은 협의 가능하며 **매입우대 사항임.**
- 상세내역은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추후 협의(규격, 기능, 에너지효율)

* 거실 및 주침실에 에어컨 설치

5. 현장사진 및 위치도 [제출양식]

전경사진

** (현장 여건에 맞게 촬영)*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가능

- 사업대상지 반경 : 3km이내 기준

- 해당 사업부지를 빨간색 점선으로 표기하고, 주변 주요시설물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함

**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6. 사업추진 일정

토지취득 (예정)	건축허가	착공	준공 (사용승인예정)	비고 (현재 진행단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7. 다음 사항은 제출도면으로 대체

1. 설계도면 제출

가. A4 출력물 1부

나. PDF 파일 1부 (접수 시 안내하는 E-mail 주소로 송부)

< 도면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고문 본문 내용 및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우리 공사 제안평면과 실내인테리어 가이드 활용 시 우대

※ **다가구주택은 중심선치수,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설계**

※ **매도신청 물건이 2개동 이상일 경우 2개동 이상 건물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및 평면도 제출(필지 분할일 경우에도 제출)**

※ 설계 유의사항, 건축설계지침 반영도가 낮은 도면은 접수 반려

※ 캐드의 글꼴은 **기본 글꼴만을 사용**하여 작성

※ 캐드에서 **PDF 변환**한 후 **1개의 파일**로 접수 시 안내한 E-mail로 송부

- 메일제목 : 심의도면(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_신청인 000
- 파일이름 : 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zip
  ① 심의도면(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pdf
  ② 서식10. 호별(세대별)전용 및 공용면적표(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xlsx
  ③ 서식11.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신청 전 도면설계 체크리스트 (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pdf
  ④ 서식12. 설계 가이드라인 셀프 체크리스트(00시 00동 00-00번지 외 0필지).pdf

2. 도면순서

가. 도면표지, 도면 목록표

나. 위치도, 도시계획사항, 지적도, 주위현황도, 대지사진

다. 설계개요서, 층별개요서, 단위세대 등 면적산출표(건축면적, 바닥면적산출표)

- 단위세대 면적산출표(도면)는 전용, 공용면적(공용벽체), 발코니 면적 등을 표기

라. Type별 시설면적표, 호별(세대별) 면적개요 (아래 '표' 형태 사용)

주택 TYPE	호수	전용 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분양 면적	주차장	계약 면적	서비스면적 (발코니확장)
			벽체 공용	코아 공용		주민 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등				

마. 건물배치도 (방위표, 주변 인접건물 표기)

바. 법규검토도

-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건물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표기, 정북방향,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기준 표기

사. 대지 횡·종단면도, 주차계획도

아. 층별 평면도 (1층 평면도에는 차량 및 보행진입부 등 마감레벨 표기)·입면도·단면도(계단 단면 포함)

자. 오수, 우수계획도

차. 단위세대 평면도

- **실별크기 안목치수로 표기**
- 세대내 빌트인(해당시)과 가구배치 표시(미설치 가구는 점선표기) 및 주방가구 길이 (냉장고 미포함) 표시

3. 참고사항

가. 평형별 필수 가구 최소 규격 예시

전용면적	식탁	침대	쇼파	책상(폭)	붙박이장	냉장고장
26㎡	-	1.0×2.0m	-	1.0m (빌트인 외)	0.7×0.6m	0.7×0.7m (빌트인 외)
36㎡	0.7×0.7m		0.8m			
46㎡	1.2×0.7m	(주침실) 1.5×2.0m (일반침실) 1.0×2.0m	1.4m	1.0m	1.0×0.6m	1.0×0.7m
65㎡			1.8m	1.2m	1.2×0.6m	
85㎡	1.4×0.7		2.6m	1.4m		1.0×0.7m (2개)

나. 입주유형에 따른 빌트인 설치 품목

구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 레인지	책상	의자	붙박이장
필수 여부	청년	○	○	○	○	○	○	○
	고령자	○	○	○	○	-	-	○
	신혼, 다자녀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제품 사양	규격	250L 이하	15kg 이하	2.3kW 이상	23L 이하	1인용	1인용	-
	기능	냉동, 냉장	세탁, 탈수	냉방	자동요리	책꽂이 일체형	접이식	옷장
	에너지효율	2등급 ↑	2등급 ↑	2등급 ↑	-	-	-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아래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일로부터 2년 [계약자(약정체결자)는 영구]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목적
휴대전화번호	신청일로부터 2년 [계약자(약정체결자)는 영구]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문자(SMS) 발송, 전화 등)

※ 위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선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위탁 관리업체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일로부터 2년 [계약자(약정체결자)는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나. 수집·이용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보유·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2년(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정보를 보존합니다.

20 . . .

성 명(법인명) : (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휴 대 전 화 번 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 등기이사* 작성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도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서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등기이사 범위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위원)

2. **[필수]** 본인(매도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 및 매입약정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 및 매입약정사업' 관련 매도신청자의 연간 계약(매매계약 또는 약정체결) 건수 조회 및 연간 계약 건수 상한기준 초과여부 검증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 및 매입약정사업' 관련 매도신청자의 연간 계약(매매계약 또는 약정체결) 건수 조회 및 연간 계약 건수 상한기준 초과여부 검증 완료시까지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필수]** 본인은 위 2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1~3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3

청렴서약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상호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사의 기존(약정)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주택매도 신청에 있어 아래와 같이 **"청탁 등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또는 대리인)은 제3자의 우월적 지위 또는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청탁(청탁시도 포함) 등 공사의 주택매입 과정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회 매도 신청주택은 즉시 심사배제 및 계약 해제 되고, 향후 본인(또는 현재 본인이 속한 법인)이 매도(또는 중개)할 주택까지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LH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 약 자 : (인) *법인인감/개인인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4

위임장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신주소 병기)			
대지면적	㎡	연면적	㎡

□ 위임자

○ 성 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인) *개인인감/법인인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자

○ 성 명 : (인) *개인인감/법인인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위임자는 상기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 )함에 있어 위임자의 모든 권한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공급됩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 양식)

서식5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소 재 지 (신주소 병기)			
대지면적	㎡	연면적	㎡

□ 감정평가 의뢰인 (매입약정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명) : (인) *개인인감/법인인감*

○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함을 동의합니다.

동의인 (등기상 토지소유자)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첨 부 : (개인) **동의인**(등기상 토지소유자) **전원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6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상기 본인은 LH에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하 '본인 및 가족'이라 한다)'이 LH공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재 LH에 재직 중이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해당 주택이 서류통과하거나, 매입 결정되어 LH와 매매계약(매입약정 포함)을 체결하게 될 경우 'LH 직원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제출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만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회 결과 '본인 및 가족'이 LH공사 퇴직 후 5년 미경과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일 경우 금회 매도신청한 주택은 LH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공급됩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 양식)

서식7

신축매입약정 관련 인허가 확약서

ㅇ LH가 조성하여 매각한 용지내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인허가(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약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족 등 다른 사유로도 인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ㅇ LH와 신축매입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매각 용지에 대한 인허가를 담보하지 않으며, 약정 체결 후 인허가 신청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도신청자에 있습니다.

ㅇ 본인은 LH가 조성하여 매각한 용지내 신축매입약정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책임이 매도신청자에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LH에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ㅇ 작　　성　　자 :　　(인)
ㅇ 법인(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8

[높이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인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확인서

1. 설계 개요			
대지위치			
지 역		용 도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세대)	연면적	㎡

2. 관련 내용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3. 확인 내용

• 높이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하여 특수전단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과 다를 시 약정해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인)

설계자(구조기술사)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 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공급됩니다. (경남 2차 정정공고 양식)

서식9

매도신청포기서

ㅇ 신청 건 토지 소재지 :

본 건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에 따라 주택을 매도 신청하였으나, 높이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됨에 따라 매도신청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매도신청자)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서식10 **[붙임2] 첨부된 <서식10> 엑셀파일 출력하여 제출**

호별(세대별) 전용 및 공용면적표

서식11

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신청 전 도면설계 체크리스트

일반 사항	주 소							
	용도지역/지구		주택유형		공급유형			
주택 현황	세대수		전용면적	, ,	층수		건물높이	m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법상: %)		
	연면적	㎡	용적율	%(법상: %)	공용면적계	㎡		
	서비스면적계	㎡	조경면적	㎡(%)	주차대수	대		
	단열방식	내단열/외단열	지붕형식	평지붕/경사지붕	치수기준	안목/중심선		

구분	항 목	기 준	설 치 내 용	비 고
법적 사항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거실면적 200㎡ 이상(단독주택) 또는 300㎡ 이상(공동주택)		
	차면시설 대상여부	인접대지와 2미터 이내 창설치		
	방화창 대상여부	인접대지와 1.5미터 이내 창설치		
	장애인/경차 설치여부	지자체 주차장 조례		
	자전거 주차대수(법상)	주차대수의 20% 설치		
	1층 피난통로 확보	단독(폭 0.9m) / 그 외(폭 1.5m)		
	주차구획 경사여부	경사도 7% 이하		
	복도유효폭	편복도 1.2M이상 중복도 1.8M이상		
공용 부위	층고	필로티/기준층/최상층		
	승강기 규모	인승/장애인 여부		
	"ㅡ"자 중복도 설계제한	중복도 길이 20m 초과시 양끝에 환기창 설치	중복도 길이 명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	공용/전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여부	주출입구까지 무장애 유/무		
	도시가스 사용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유/무		
	옥내소화전 설치 여부	연면적 1,500㎡ 이상(오피스텔)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물탱크실 설치	유(위치 명기)/무		
	차량 진입도로 폭	개소 / 폭		
단위 세대	주방 및 욕실 PD 설치 여부	유/무		
	에어컨실외기실 설치	발코니 / 공용		
	타세대 평면 간섭여부	거실, 침실 침범 유/무		
	기계환기 설치 여부	30세대 이상(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외벽 단열재	종류/두께		
	필로티 하부 단열재	종류/두께		
	지붕층 단열재	종류/두께		
	세대 외부 창호	유리두께(구성), 로이, 아르곤 여부	ex)외측 22(5+12+5), 로이, 아르곤 내측 22(5+12+5), 아르곤	적용부위
	세대 내부 창호	두께(구성), 로이, 아르곤 여부		적용부위
	공용부위 창호(계단실,복도)	두께(구성), 로이, 아르곤 여부		적용부위
	소방창	두께(구성), 로이, 아르곤 여부		

평면계획(안목치수)

전용면적	침실규격		거실폭	주방가구	욕실	신발장
31	큰방	가로 * 세로m	m	m	가로 * 세로 m	폭 * 깊이 mm
	작은방					
84	큰방					
	작은방					
	작은방					

위 사항은 매도인 스스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시공 · 약정해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제출자 (매도인) : (인)

서식12

설계 가이드라인 셀프 체크리스트 [공통, 계획/기본설계]

1.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적용여부
일반		▪ 관련법령,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 등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방 갯수는 공급유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콘크리트 내벽(칸막이벽) 두께는 100mm(단배근적용) 이상, 외벽두께는 200mm (복배근적용) 이상으로 한다.[단, 내벽이 내력벽인 경우 150mm(복배근 적용)이상]	
		▪ 붙임 <서식1> 7. **제출도면 사항의 유의사항과 도면 순서에 따른 도면 제출** 확인	
건축	전용부	▪ 고령자 주택(장애인 공급주택 포함)은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장애인 겸용 승강기를 계획한다. [붙임4.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 **6층 이상 건축물은 내단열을 원칙**으로 하고, 6층 미만은 권장한다.	
	공용부	▪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벽체, 보 하부·측면 등 포함)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하여야 한다.	
		▪ 4층 이상(필로티 포함)이거나 고령자를 대상(층수 관계없이)으로 하는 건축물은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미설치시 매입 제외)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하며 장애인 주차구획 계획 대상 주택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필수 설치한다. [붙임4.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기계		▪ 소방시설물의 설계 및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관련법 및 소방시설물별 「화재안전기준(NFSC)」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대 적정 수압 0.25Mpa(2.5kg/cm2)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적정 수압 미확보시 기계실 및 급수가압펌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대 보일러 및 냉방시설은 세대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또는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또는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의 경우 전열교환기(스마트환기시스템) 설치를 위한 외부 환기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기본설계 단계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공용부	단지배치	▪ 당해 대지의 원활한 우수처리 및 건축물 내부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 레벨을 고려하여 당해 대지 G.L 및 건축물 1층 바닥 F.L을 계획한다.	
		▪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다음 기준을 반영토록 한다. -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을 계획하거나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과 마주보게 계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간의 거실 또는 침실이 마주보는 배치를 지양한다. - 1층 세대 계획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세대 전면녹지 등 완충공간 또는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 가급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단지 경계에 2m 이상의 단차가 있어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 부분까지 당해 **옹벽의 높이만큼 이격**한다. 단,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 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우고,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제외	
		▪ 부지 경계부는 담장, 휀스 설치 등으로 인접대지와의 경계 계획을 수립한다.	
		▪ 도로여건, 정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이삿짐 차량 및 소방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 주차구획 설계시 원활한 차량 출입 및 승하차시 출입문 개폐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건축물 출입구로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단독주택 유효너비 0.9m, 그 외 건축물 1.5m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내 기둥 등이 차량 승.하차시 간섭이 되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	
	복도 등	▪ 공용공간은 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중복도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복도 양끝 등에 1개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형의 경우 결로 저감 및 우수침입 방지 등을 위해 복도창호를 설치한다.	
		▪ 편복도 유효폭은 1,200mm이상, **중복도의 유효폭은 1,800mm(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한함)** 이상 그리고 그 외 중복도로서 당해층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경우는 1,500mm 이상으로 한다. * (유효폭) 우수선홈통 및 벽체 안전손잡이(주거약자용주택 등) 폭을 제외한 순수 통과가능 폭	
		▪ 소방관 진입창은 공용부 설치를 권장하며, 전용부에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 높이 확보를 위해 실내 바닥면에서 창틀 제외한 창호까지 높이를 1,200mm로 계획한다.	
	주출입구	▪ 주거용(오피스텔 포함)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 이외 다른 용도(주민공동시설 제외)를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계획하는 경우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거용과 분리된 구조로 계획한다.	
		▪ 동 출입문은 자동문(유효폭 900mm, 높이 2,200mm 이상)으로 계획하고 전자출입시스템을 적용한다.	
		▪ 출입구 상부에 창(또는 개구부)이 있는 경우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한다.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계단	▪ 계단의 유효폭은 1,200mm(옥외계단은 900mm) 이상 확보하고, 단너비는 260mm이상, 단높이는 180mm**(170이하 권장)** 이하로 설계한다.	
		▪ 사선돌음계단을 금지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0.3m 이상의 폭이 뚫려있는 ㅁ자형 계단실은 지양하고, 계획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 계단 통행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단참의 현관 설치 시 이격거리와 개폐 방향을 고려한다.	
공용부	평면계획	▪ 전용공간은 일조·채광 및 환기가 양호하도록 가급적 **남향 위주의 계획을 권장**하며, 거실 및 침실 등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에는 적정 크기의 창을 설치한다.	
		▪ 단위세대는 아래 최소 계획기준 준수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 베이수 / 욕실수 / 실별 안목 최소 치수: 거실(폭), 주침실, 일반침실 / 주방가구 / 신발장 26㎡ / 1 / 1 / 3.6m / 1.8m / 0.7m 36㎡ / 1 / 1 / 3.6m / 1.8m / 0.7m 46㎡ / 2 / 1 / 3.0m / 3.0×2.7m / (2.7×2.7m) / 2.4m / 0.9m 55㎡ / 2 / 1 / 3.3m / 3.0×3.0m / 2.7×2.7m / 3.0m / 1.0m 65㎡ / 3 / 2 / 3.6m / 3.3×3.0m / 3.3m / 1.2m 85㎡ / 3 / 2 / 3.9m / 3.6×3.0m / 3.9m / 1.4m * ( )는 권장사항	
		▪ 평면계획 시 위 <단위세대 최소 계획기준>을 적용하며, 평형 예시에 없는 평형은 규모가 한 단계 크거나 작은 평형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실별 안목 최소 치수는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인접세대 및 공용부와 연결된 베란다, 테라스 등은 프라이버시 확보, 방범, 보안 등을 고려하여 2m 이상 높이의 벽체 등으로 구획한다.	
		▪ 외부로부터 세대 각 부분으로의 이사짐, 가전, 가구 등의 원활한 운반이 가능하도록 E/V나 외부창호 규격, 공용 복도 및 단위세대의 복도 폭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현관으로부터 각 실로 통하는 실내 복도 유효폭은 1,0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세대 외벽에는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대(발코니)에는 외부창호를 설치하되, 2베이 이상 주택의 발코니 계획시 실내 공간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빨래 건조 등 습식공간을 제외한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계획한다.	
		▪ 승강기 계획시 세대 거실 또는 침실과 인접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음 전달 방지를 위해 이중벽 설치 등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최소길이'는 냉장고장을 제외한 주방가구* 하부장 전면길이로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키큰장이나 하부장만 있는 구간 및 상판 하부 빌트인 가전 설치구간도 길이 산정 포함	
		▪ 청년형, 고령자형의 경우 취사빈도 및 기타 수납가구 설계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 '주방가구 최소길이'에도 불구하고 하부장 기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등 최소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다.	
		▪ '신발장 최소폭'은 신발장 몸체의 가로길이로, 복수의 신발장 설치 시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발장 대신 현관창고 설계 시 현관창고 선반의 전면길이를 신발장 폭으로 본다.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공용부	평면계획	▪ 평면도 작성시 식탁, 침대, 쇼파, 붙박이장, 냉장고장 및 TV, 빌트인 가구·가전 등 평형별 주요 가구(가전) 배치가능 여부 및 공간 활용성 검토를 위해 아래 규격*을 참고하여 **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하고 창호의 종류(WD, PL 등)와 치수(W×H)를 기입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 포함가구는 실선, 입주자 개별설치 가구는 점선으로 표시 < 평형별 필수 가구 최소 규격 예시>	

전용면적	식탁	침대	쇼파	책상(폭)	붙박이장	냉장고장
26㎡	-	1.0×2.0m	-	1.0m (빌트인 외)	0.7×0.6m	0.7×0.7m (빌트인 외)
36㎡	0.7×0.7m		0.8m			
46㎡	1.2×0.7m	(주침실) 1.5×2.0m	1.4m	1.0m	1.0×0.6m	1.0×0.7m
65㎡		(일반침실) 1.0×2.0m	1.8m	1.2m	1.2×0.6m	
85㎡	1.4×0.7m		2.6m	1.4m		1.0×0.7m (2개)

구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의자	붙박이장
필수 여부	청년	○	○	○	○	○	○	○
	고령자	○	○	○	○	-	-	○
	신혼, 다자녀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사업자 제안
제품 사양	규격	250L 이하	15kg 이하	2.3kW 이상	23L 이하	1인용	1인용	-
	기능	냉동, 냉장	세탁, 탈수	냉방	자동요리	학꽂이 일체형	접이식	옷장
	에너지효율	2등급↑	2등급↑	2등급↑	-	-	-	-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 입주유형에 따라 빌트인 가전·가구를 설치한다.	
		▪ 전기쿡탑은 全세대 설치하며 붙박이장 규격은 평형별로 맞춤형으로 적용	
		▪ 청년·고령자 주택(평형 무관)의 거실 및 주침실에는 냉방용량을 고려하여 에어컨을 설치한다.	
		▪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은 거실 및 주침실에 냉매배관 및 냉매박스를 설치한다. (응축수 드레인 계획 수립)	
전용부	현관	▪ 현관문 전면에 벽체 등이 있는 경우 E/V 홀 및 복도에서 가구(장롱) 반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현관과 벽체간의 유효거리는 1,400mm 이상**을 확보한다.	
		▪ 현관 깊이(현관문에서 마루귀틀까지 거리)는 최소 1,000mm를 확보한다.	
		▪ 인터폰 설치(외부)를 위해 현관 옆 300mm 이상의 벽체 유효길이를 확보한다.	
		▪ 현관문 규격은 이사짐 출입 및 결로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호칭치수 너비(W) 1,000mm×높이(H) 2,100mm 이상으로, 유효폭 900mm 이상을 확보한다.	
		▪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문이 마주보는 구조를 지양하고, 현관문 배치를 엇갈리게 하여 현관문 개폐에 간섭이 없도록 해야한다.	
		▪ 현관문 개폐 시 가스계량기 및 우수관 등과 간섭이 없도록 하여 피난방향으로 최소 90도 이상 열리는 구조로 계획한다.	
		▪ 신발장 깊이는 문짝 포함 400mm 이상, 문짝너비는 350~600mm(350~450mm 권장)하되 3Door : 1,050 ~1,350mm, 4Door : 1,400~1,800mm으로 한다. - 우산꽂이 세대당 1개소 설치(측판부착 또는 문짝부착 등)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100 참고)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전용부	거실,침실	▪ 층고는 기준층 기준 2,800mm이상으로 하되 **최상층과 최하층은 단열재 두께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천장고(반자높이)는 2,300mm으로 계획한다.	
		▪ 침실문 폭은 900mm 이상(호칭치수 기준)으로 한다.	
		▪ 붙박이장 깊이는 문짝 포함 600mm 이상, 문짝너비는 350~600mm (350~450mm 권장) 하되, 3Door : 1,050 ~1,350mm, 4Door : 1,400~1,800mm으로 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300 참고)	
		▪ 좌식 화장대는 폭(W) 800mm 이상, 입식은 폭(W) 400mm 이상을 권장한다. (LH 건축 표준상세도 DA-90-500 참고)	
	주방	▪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및 냉장고장(전용 60㎡ 이상)은 필수 설치하고 키큰장, 아일랜드장 등은 선택 적용한다. * 전용 60㎡ 미만은 냉장고장 설치를 권장하되 미설치시 냉장고 설치공간 필수 확보	
		▪ 전용 60㎡ 이상 평형의 주방가구 설계시 일반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해 냉장고장 2개소 설치를 권장한다.	
		▪ 조리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냉장고(장)→개수대→조리대→가열대 순으로 계획을 권장하고, 개수대가 설치된 하부장 면에 뒷선반을 설치한다(가열대 제외)	
		▪ 환기 등을 위해 외기 또는 발코니와 면하는 벽체에 창호를 설치하되, 가열대 전면부 창호 설치는 금지한다.	
	욕실	▪ 양변기, 세면기 및 샤워공간(또는 욕조) 설치가 가능하고 출입문 개폐 시 욕실 내부의 도기류 등과의 간섭이 없도록 **안목치수 기준 1.5×2.2m 이상**으로 설계한다. (PD공간 포함)	
		▪ 평형별 욕실 개수에 따라 욕실 2개 설계 주택은 욕실에 각각 욕조 및 샤워공간을 계획하고 욕실 1개 설계 주택은 샤워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샤워공간은 안목치수 기준 0.9m×0.9m 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물 튀김 방지를 위해 샤워부스(1Bath는 샤워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샤워칸막이, 샤워부스 출입문을 포함한 샤워공간에 설치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 [자료실 업로드-1. LH 표준상세도 DA-92-015 참고]	
		▪ 출입문 규격은 호칭치수 기준 750mm 이상으로 하며 개폐 시 욕실 내부 도기류 등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발코니	▪ 발코니(보일러실 등)의 최소 유효 깊이는 세탁기, 우수홈통 설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1,0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세탁실은 가급적 발코니에 계획하고, 세탁기 설치패드 규격은 800×1,000 (H=45mm) 이상 확보하고, 세탁기 발코니 출입문, 드럼세탁기 문 개폐 및 입주민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획한다. *세탁기 후면 보일러 설치 시 800×1300 이상으로 한다.(깊이 300 추가확보)	
		▪ 발코니(보일러실 등)의 최소 유효 깊이는 세탁기, 우수홈통 설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1,0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세탁실 출입 창호는 문짝이 부착된 상태에서 세탁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폭 900mm 이상(유효폭 710mm 이상 확보)으로 계획한다.	
		▪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에 유의하여 발코니 계획** - 확장 :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벽체의 중심 선 - 비확장 :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벽체 바깥선(외단열시 단열재 끝선)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전용부	실외기실	▪ 실외기실 가로방향 유효폭은 실외기 크기를 고려하여 1,2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실외기실 크기 축소 등 조정이 가능하다.	
		▪ 단위세대 실외기 계획 시, **각 세대 별로 설치**하거나 복수 세대의 실외기실을 통합할 경우는 당해 층 공용부에서 출입가능한 곳에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고, 응축수 처리를 위한 배수드레인 등을 설치한다.	
	AD/PD	▪ 세대 내에 욕실 및 다용도실 등은 PD(Pipe Duct)공간을, 주방은 PD(Pipe Duct) 공간 및 AD(AirDuct)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당해층 배기 계획 시 AD 설치 제외하고 별도 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및 발코니 등의 배관은 PD공간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규모에 따라 각종 PD공간을 공용공간에 적절히 확보하며, 특히 옥내소화전함 설치 등으로 내화구조를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벽체에 매립설치는 불가한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 커뮤니티시설은 매입 공고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주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설을 계획한다.	
		▪ 커뮤니티시설은 지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규모, 입주대상자 유형을 감안하여 협의를 거쳐 1층 외 계획도 가능하다.(내부설치비품 협의)	
		▪ 주민공동시설 계획 시 청년층 주택의 피트니스센터, 공용세탁실, 독서실 등 입주계층별 주거서비스 니즈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자료실 업로드-4. 매입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설계 및 실내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용세탁실 계획 시 소음 발생을 고려하여 세탁실 측면에는 세대 배치를 지양하고, [붙임7. 공용세탁실 설계 예시]를 준용하여 세탁실 규모 및 세탁기, 건조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며, 대형 이불빨래가 가능한 용량을 최소 1대 설치한다.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0호 이상 오피스텔은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 휴게시설*(바닥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참고	
	전기실	▪ 전기실, 기계실 등은 세대 소음 및 진동 발생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옥상 배치는 지양한다.	
		▪ 전기실을 계획할 경우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통로, 주차구역 등과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발전기실과 인접 배치한다.	
	방재실	▪ 방재실을 계획할 경우 화재, 침수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피난층에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하1층에 수직 동선과 인접하여 계획할 수 있다.	
	통신실 (MDF)	▪ MDF실 출입문은 0.9m 이상,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지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수직동선과 인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물탱크실	▪ 물탱크실은 구조안전, 세대 소음 및 진동 발생을 고려하여 1층이나 지하에 계획하고, 옥상 배치는 지양한다.	
	PIT	▪ 건축물 상하부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계획에 따라 구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종 배관이 보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 관경, 단열재 두께, 설치공간 등을 고려하여 PIT를 설치하고 설비배관 하부 유효높이를 1.8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 지하에 PIT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배관 하부 유효높이를 1.8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내 용	적정 여부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 전체 주차대수, 확장형, 경형, 전기차 등 종류별 주차대수는 관련법령 및 조례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지하주차장을 권장한다.	
		▪ 주차장 구조 기본모듈은 주차면 가로방향 3대 이하로 하고, 지하주차장 계획 시 주동 통합형으로 계획한다.	
		▪ 주차공간의 유효 천장고는 2,100mm 이상, 차량 통로의 유효 천장고는 2,300mm 이상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구에서 인지 가능한 위치에 차량진입 제한높이를 표시한다. (단, 택배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의 진입을 고려할 경우 차량 통로 유효 천장고를 2,700mm 이상으로 하고, 소방차량 진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천장고를 확보한다.)	
		▪ 주차장 내부 **막다른 곳에는 회차공간(2.5×5,0m이상)을 계획**하고 주차장 바닥에 '회차' 표시를 한다.	
기계	전용부	▪ 발코니 배수관은 외기에 면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 급수 입상관은 PD(세대 내 또는 공용 PD)를 구획하여 설치한다. - 벽체 매립시공 금지	
조경	쓰레기 수거시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분리수거 용기 설치공간은 시선차단,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고려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수거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지상층에 계획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층에 계획할 경우, 수거차량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당 동선의 천정고는 2.7m 이상 확보하고, 환기 및 화재 대비 설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매도인 스스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시공 · 약정해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20 년 월 일

제출자 (매도인) : (인)

서식13

화재방지방안에 대한 자재선정 · 시공에 대한 계획서

화재방지방안에 대한 자재선정 · 시공에 대한 계획서(확인서)

(3층 이상 건축물 외단열재 및 필로티하부 단열재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계획서(확인서))

1. 설계 개요

대지위치			
지 역		용 도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세대)	연면적	㎡

2. 관계 법령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무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⑤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⑦ 영 제6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 사항

외벽재	주구조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외벽 마감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단열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천장 (필로티)	주구조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외벽 마감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단열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타	마감재료		

4. 검토 의견 및 확인

- 위 물건의 외벽과 필로티하부의 단열 및 마감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준불연 및 불연 마감재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 첨부서류**(추후 3단계 점검 시 제출) : 열전도율 성적서, 열방출량 및 가스유해성(준불연재) 시험성적서 등**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도서 협의 업무와 인허가 업무(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관련 등)에 따른 추가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인)

설계자(건 축 사) : (인)

서식14

지역권 설정계약서 [진입도로 사도 조건부 매도신청 관련]

_____(사도소유자)를 "갑"이라 하고, _____(매도신청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
갑 소유인 *○○시 ○○동 ○○번지*의 전 *00㎡*을 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 *○○번지* 토지 *00㎡*에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도보 및 자동차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 등기완료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과)
위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로 을은 갑에게 30년 *금 000원*의 지료를 매년 *0월 0일* 갑의 주소로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특정승계인은 지료지급 의무를 승계(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지역권설정등기)
갑은 *0000년 0월 0일*까지 위 지역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갑의 협조의무)
갑은 그 소유의 위 토지에 을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케 되거나, 지장을 초래케 되면 *금 000원*을 을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을 해제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승역지의 승계)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인(양수인)에게 위 토지가 승역지임을 고지하여, 그 의무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소됨으로써 종료된 때, 을은 공작물을 수거하여 지체없이 갑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을은 인수의 통로 등을 막거나 그 이용 시설을 제거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제1조에 따른 "을" 소유 토지 위에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주택을 "을" 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 또는 매입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제6조에 따른 승계인)은 지역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도소유자 갑 : *이 름* (인)
매도신청인 을 : *회 사 명* (인)
대표이사 : *이 름*

첨부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